

출장보고서

A. 출장 개요

- ☐ 목적: ADB Conference on Global Financial Economic Challenges, 2012
참석
- ☐ 출장지: 미국(워싱턴DC)
- ☐ 출장자: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예보 박병원 차장 동행)
- ☐ 기간: 2012년 10월 16일~21일 (5박 6일)
 - 출장 일정
 - * 10월 16일(화) 출국 (인천 → 워싱턴DC)
 - * 10월 17일(수) US Ex-Im Bank
 - * 10월 18일(목) FDIC Division of Resolutions & Receiverships
(James Gallagher, Resolution & Closings Manager)
 - * 10월 19일(금) FDIC Division of Resolutions & Receiverships
(Rick Hoffman, Risk Manager)
 - * 10월 20일(토) 귀국 (워싱턴DC → 인천), 10월 21일(일) 도착

B. 출장 활동 내역

1. US Ex-Im Bank

- ☐ 면담자: Ms. Piper P. Moffatt,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Relations Policy Group; Isabel Galdiz, Senior Policy Analyst; Stephanie R. Baker, Policy Analyst
- ☐ 면담내용
 - US Ex-Im의 지배구조
 - * 정부조직임. 정부산하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일부

- * 이사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4년)를 준수. 보고서를 재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 * 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재무부)에 예속된다는 논쟁이 없으나, 의회 등 정치권이나 해외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외국 정부가 특정국(브라질, 터키 등)이 신용등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압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압력에 대하여 스스로 독립성(독자적 판단)을 유지하려는 법률과 관행이 정착되어 있음.
- * 기관의 독립성은 법률에 기초하고 있음. 명확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과 관계없이 임무를 수행하면 됨. 정부의 거시정책이나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

○ 위험관리 및 예산구조

- * 일반적인 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 * 현재 납입자본금(10억달러), 인수허용한도(1천억달러), 실제지원 (250억달러) 등이고 회계상 납입자본금은 모두 고갈되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황
- * 하지만, 이러한 예산구조는 US Ex-Im의 독특한 충당금제도 때문임. 일종의 확률적대손충당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기자금지원시 예상손실률을 적용하여 지원당시부터 충당금을 바로 적립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자본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지만, 기금은 충분한 상황
- * 중장기적 수지균형을 추구하는 여타 국가의 ECA와는 달리 매년 수지균형을 추구함. 즉, 손실위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에서 지원받는 방식을 택함.
- * 이러한 예산구조로 인하여 여타 정부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
- * US Ex-Im의 운영비는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활용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음.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profit sharing)은 없음.

○ 지원한도

- * 총인수한도(1천억달러) 이외에 별다른 조건이 없음.
- * 개별 대출(3천만달러), 보증(5천만달러)에 대해서 NAC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가 심의(review)할 수 있으나,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님.
- * 1천억달러 이상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또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US Ex-Im임.

○ 일몰(sun-set)기관으로서의 위상

- * US Ex-Im은 법률상 4~5년 마다 존속여부를 의회에서 인준받아야 하는 기관임.
- * 일몰기관으로서 설립된 이유는 US Ex-Im이 대공황 이후에 설립된 것과 유관함. 당시의 필요성에 의하여 기관이 설립되다보니 필요성 또는 유용성(utility)이 사라지게 되면 기관을 폐쇄하기 용이하기 위하여 일몰기관으로 설립하였음. 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음.
- * 이에 따라 US Ex-Im은 상시적으로 존재이유를 의회에 입증해야 함. US Ex-Im의 업무는 민간시장이 취급하지 않은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것임(법률상 민간과 경합하지 못함). 이러한 부문을 부단히 발굴하여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 향후 상당기간 이러한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US Ex-Im의 존속여부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됨. 당장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정책적 성향에 따라) US Ex-Im의 축소 또는 확장이 결정될 것임. 다만, 현재의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따른 US Ex-Im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금융지원

- * 민간금융이 지원하지 않는 부문에 대하여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있음. 자산의 구성을 보면, 몇몇 부문에 편중된 현상을 알 수 있음. 산업별로는 항공기(보잉)의 수출과 관련하여 구매자신용이 압도적으로 많음.
- * 2008년 위기 이후 금융경색이 지속되면서 US Ex-Im은 risk cover보

다는 직접 자금지원 방식의 금융지원이 많아지고 있음. 위기 전과 비교하여 총자산 규모가 3배 가량 증가한 상황

- *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다고 US Ex-Im의 임직원 수는 큰 변화가 없음. 금융지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인원을 유지한다고 함.
- * 법률상 2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지원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 하한선 정도만 지원

○ 여타 유관기관과의 관계

- * 유관기관으로는 OPIC, PEPCo, FCIA, SBA 등이 있음.
- * OPIC은 주로 투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을 취급하는 US Ex-Im과 업무중복의 문제는 거의 없음.
- * PEPCO는 30개 정도의 민간금융기관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기관인데, PEPCO의 자금조달에 US Ex-Im이 전액 보증을 제공
- *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TDA → OPIC → US Ex-Im의 순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함.

○ 향후 ECA의 전망

- * ECA의 역할은 결국 시장(민간금융기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

2. FDIC

- 면담자: James Gallagher, Resolution & Closings Manager; Rick Hoffman, Risk Manager

가. 최근 FDIC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동향

- 2002년 ~ 2011년까지 FDIC는 총 435개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
 - 2009년 이후 389개의 부보금융기관을 정리

Failure Activity

Year	Near-Failures	Actual Failures
2002	14	11
2003	11	3
2004	2	4
2005	1	0
2006	3	0
2007	5	3
2008	17	25
2009	16	140
2010	65	157
2011*	3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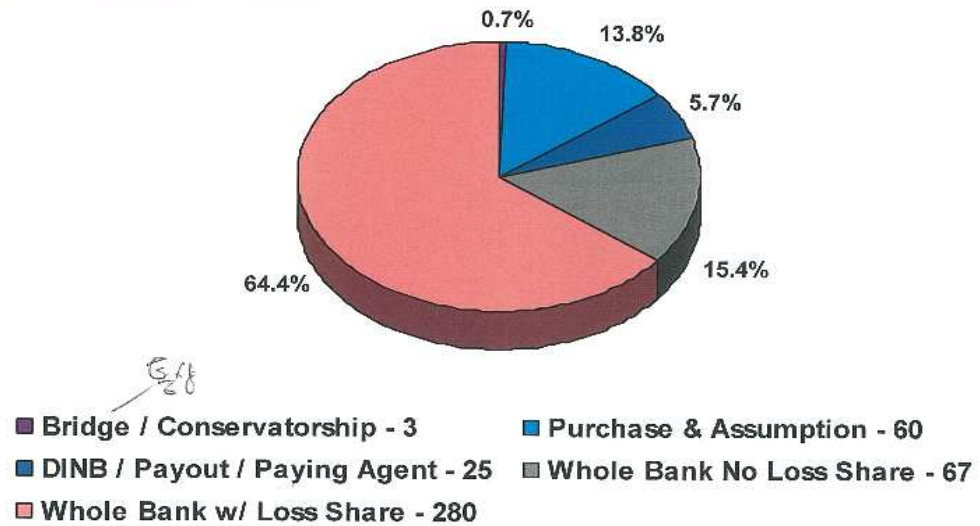
* Near Failures in 2011 where an FDIC Team Leader entered the bank totaled 18.

- 정리방식별로는 Whole Bank with loss share(280건), Whole Bank No loss share(67건), P&A(60건), 보험금 지급(25건), 가교금융기관(3건)으로

* 2000년대에는 주로 Whole Bank with loss share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Bank Resolutions by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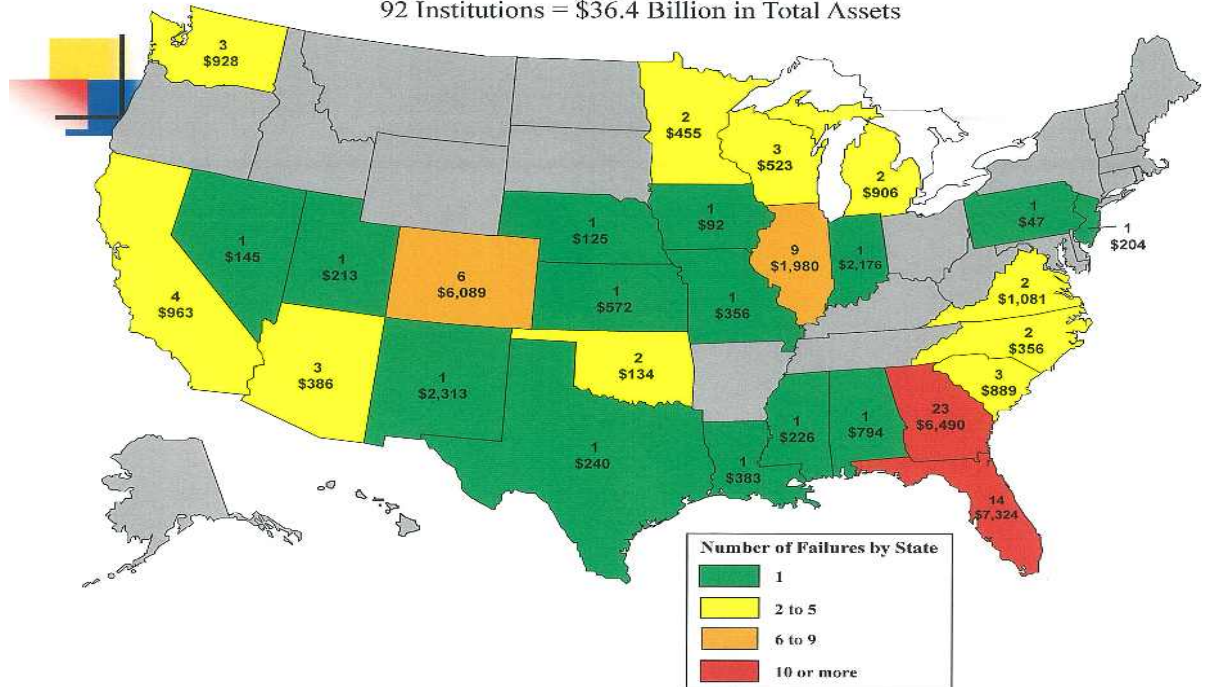


Whole Bank with loss share is the most common transaction with total transactions of 435 from 2002 – 2011

Failure Activity: Number of Institutions and Total Assets

January 2011 – December 2011

92 Institutions = \$36.4 Billion in Total Assets



나. FDIC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 개요

□ 정리절차시 FDIC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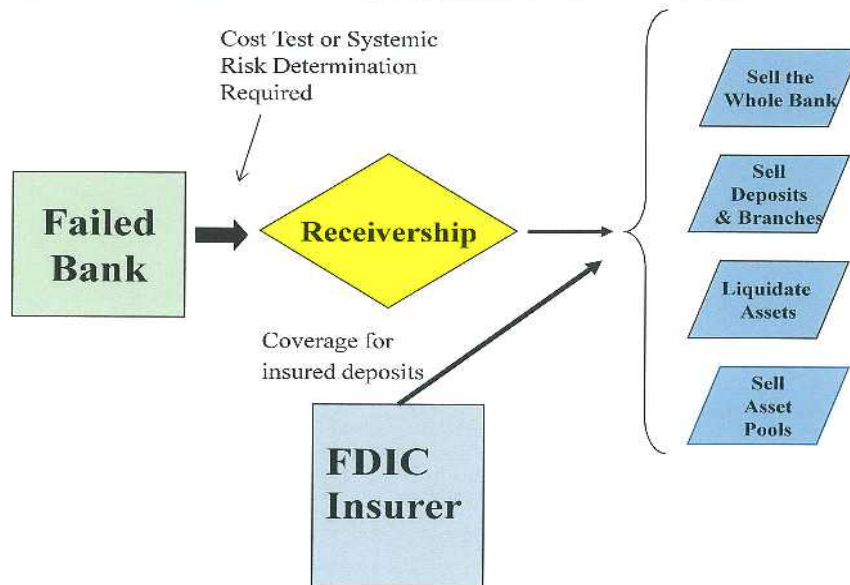
- 연방예금보험법상 부보기관의 자본충실도가 5등급*으로 분류되면 감독 당국은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 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지명하여야 함

* 총자산대비 유형자본비율이 2% 미만

- FDIC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폐쇄 전에 시장매각 추진 등 정리 작업을 진행함

* 폐쇄 전 최종적인 정리방식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교은행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

Resolutions: Typical Resolutio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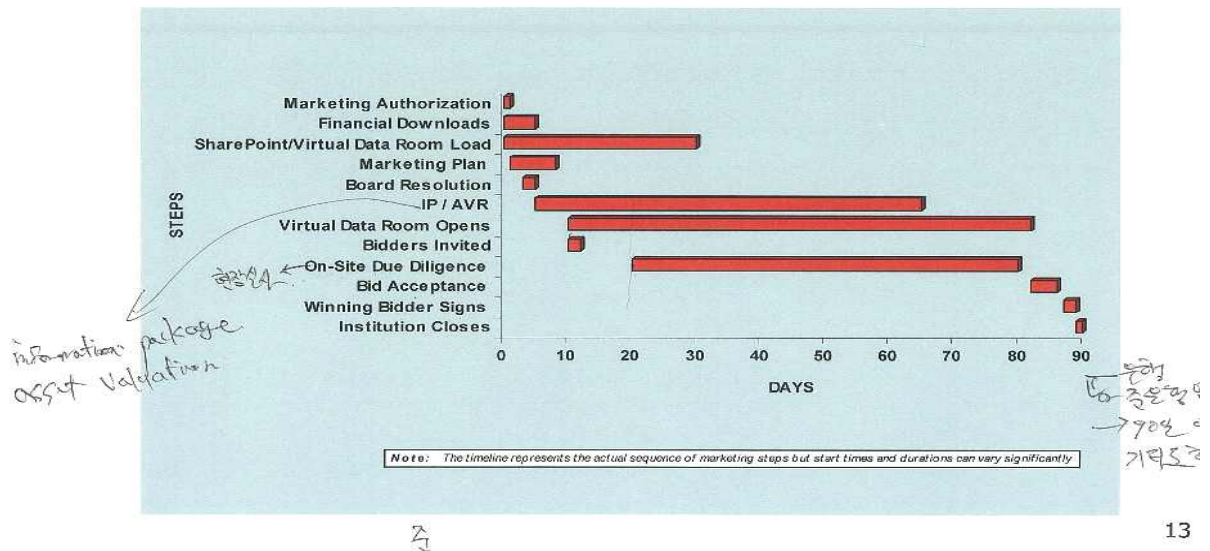
1

□ 정리절차의 진행 개요

- 금융기관이 부실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통지하는 감독당국의 부실 금융기관 통지서(failing bank letter)를 접수하면 FDIC는 본격적인 정리 절차를 개시
- FDIC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감독당국 등에 재무자료를 요청하고, 직원을 해당 기관에 파견하여 추가 정보 등을 수집
-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자산과 부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분석하고 내부 평가방법에 따라 자산의 청산 가치를 추정(AVR: Asset Value Review)하고 시장입찰을 통해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정리방식 결정
- 정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감독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을 폐쇄하고 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하는 한편, FDIC는 매각된 자산과 인수된 예금을 인수자에게 이전



Typical Resolution Timeline



13

□ P&A 거래형태

- Whole Bank P&A
 - * 부실금융기관의 모든 자산을 있는 그대로 할인하여 인수하는 방식이나,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기가 곤란
- 풋/콜옵션 P&A(P&A with Put/Call Options)
 - * 풋옵션은 특정 조건하에서 인수자가 희망할 경우 FDIC에게 인수한 일부자산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이며,
 - * 콜옵션은 매각 종료후 특정 조건하에서 인수자가 일부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선택적 풀별 매각방식(P&A with Optional Loan Pools)
 - * 입찰자들은 예금과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풀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 * FDIC는 내부 평가방법에 따라 자산의 청산 가치를 추정(AVR: Asset Value Review)를 추정하고 이를 최저가격으로 비용테스트를 실시하여 풀별 최소 입찰자를 선정

- 손실분담 P&A(P&A with Loss Share)

- * FDIC는 부실금융기관의 특정 자산pool에 대하여 손실분담계약을 통해 동 자산의 손실 및 회수액을 분담

□ 가교은행(bridge bank)

- FDIC는 급작스런 파산 등으로 인수자 선정 등 궁극적인 정리방식을 모색할 시간이 부족하나, 영업권 가치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하여 임시적 정리대안인 가교은행, 보전관리(conservatorship) 방식을 활용
- 가교은행(bridge bank)이란 통화감독청(OCC)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국법은행으로서 FDIC가 운영
 - *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FDIC는 가교은행 대신 보전관리(conservatorship)를 활용
 - * 보전관리란 저축은행감독청(OTS)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설립되는 연방저축조합으로서, FDIC는 동 기관의 보전관리인(conservator)으로 임명됨.
- 가교은행 적용가능 금융기관
 - * 가교은행 설립을 통해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권 가치를 보유한 금융기관
 - * 급박하게 폐쇄되어 정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대형금융기관
 - * 파산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

다. 질의 및 응답

Q) FDIC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는?

A) 감독당국은 특정금융기관의 파산이 임박하면(통상 자본충실도가 5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시점), 그 즉시 FDIC에 부실금융기관 통지서(failing bank letter)를 발송함. 연방예금보험법상 자본충실도가 5등급 이하로 분류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FDIC의 동의하에 자본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FDIC를 파산관재인(receiver) 등으로 임명함. FDIC는 부실금융기관 통지서 수령 즉시 정리절차를 개시하여 인수자를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함. 이러한 정리준비작업은 해당 금융기관이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금융기관 폐쇄와 동시에 정리작업은 완료됨.

Q) 정리절차 중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A)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FDIC는 입찰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에 5~15명의 resolution specialist로 구성된 정리팀을 파견하여 잠재적 입찰자에게 제공할 부실금융기관 정보철(IP: Information Package,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유형, legal document, 선택된 정리방법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됨) 작성하고, 최소비용테스트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산가치평가(AVR: Asset Valuation Review)를 실시하여 파산시 FDIC가 부담하게 될 정리비용을 산정함. 이를 바탕으로 부실금융기관 매각을 위한 전반적 전략, 매각 권고방식, 거래별 자산·예금 매각방식, 자산폴 구성에 관한 전략을 수립함. 전략이 수립되면 잠재적 입찰자들에게 제공할 거래 개요서(Transaction Recap) 작성하고, 감독·소비자보호국(The Division of Supervision and Consumer Protection)의 승인을 얻어 잠재적 입찰자(통상 300~500개)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송부하고 information meeting을 열어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상세 내용, 실사 및 입찰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함. 잠재적 입찰자들은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거나 현장실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중 이전을 원하는 일부를 선택하여 입찰가를 결정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함. 입찰은 통상 금융기관 폐쇄 일주일 전에 마감하며 FDIC는 모든 입찰 제안서에 대하여 자체 평가한 정리비용과 비교하여 최소비용테스트를 실시하고 입찰자를 결정함. 입찰이 종료되면 FDIC는 정리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FDIC 이사회에 최소비용분석과 비보호예금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분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후 입찰자, 감독당국, 금융기관 폐쇄팀에 대해 정리방식 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인수자가 최종 인수계약서에 서명하면 입찰자에게 자산과 부채가 인수되며 부실금융기관은 폐쇄됨.

Q) FDIC가 부실금융기관 통지서를 수령 후 해당 금융기관에 FDIC 정리팀 임점시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A) FDIC는 정리작업에 착수하면 일차적으로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주요 재무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정리팀을 해당기관에 직접 파견하여 현장상황 및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잠재적 입찰자들에게 제공할 정보철(IP)을 작성함.

Q) 정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 FDIC는 해당금융기관의 임원과 정리절차를 논의하고, 해당금융기관 또는 data processing servicer가 제공하는 대출 및 예금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한편 자산의 청산가치 등을 산정하여 잠재적 입찰자들에게 제공할 정보철(IP, information package)를 작성함
정보철(IP)은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유형, 법률적 문서, 선택된 정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초 재무정보의 기준일은 FDIC와 해당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동 자료는 잠재적 입찰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갱신됨.

Q) 임점시 해당 기관 임직원의 반발은 없는가?

A) 해당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구책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폐쇄되므로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 기관의 직원들의 이해에 부합되어 대부분의 경우 FDIC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짐

Q) FDIC가 'failing bank letter'를 받으면 정리절차를 진행하는데 동 사실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뱅크런 등의 우려는 없는지? FDIC는 이러한 시장 불안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A) 금융기관이 정리되더라도 폐쇄 직후 인수기관을 통해 즉각적으로 영업이 재개되고 FDIC가 즉각적인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자들의 불편이 크지 않고, 미국에서는 손실이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비보호예금자에 대해서도 예금우선변제 제도에 따

라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됨으로써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대한 시장의 동요는 거의 없는 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C 및 잠재적 입찰자들은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나 정리 등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Q) P&A시 인수자를 공개적으로 물색하는가? 비공개로 물색하는가?

A) FDIC가 금융기관 정리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쟁입찰시 잠재적 입찰자들(보통 300~500개의 대상자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고, information meeting을 열어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상세 내용, 실사 및 입찰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때 비밀유지약정을 제출한 입찰자들에 한 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FDIC는 failing institution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으나 비밀유지약정을 통해 가능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Q) 비공개로 인수자를 물색하는 경우 기존 부실저축은행 대주주가 매각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가?

A) 감독당국은 FDIC의 동의하에 자본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FDIC를 파산관재인(receiver) 등으로 임명하는데 파산관재인은 자산의 처분권한을 보유하므로 대주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부실저축은행은 대부분 자본잠식이 된 상태이므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음

Q) 부실저축은행의 입찰시 인수자의 자격요건이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무엇인가?

A) FDIC는 부실저축은행의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금융기관(보통 300~500개의 금융기관이 해당)을 잠재적 인수대상자로 보고 인수를 위한 안내메일을 송부함

Q) 인수자 물색이 비공개이거나 일부로 제한할 경우 불공정 시비는 없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다수(300~500개)의 금융기관에 인수를 위한 안내메일을 송부하기 때문에 일부로 제한하였다는 이의는 제기되지 아니함

Q) P&A시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어떠한가?

A) 불법자산 등 소수의 자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이전 대상이 됨.

Q)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누가 결정하는가? FDIC인가 인수자인가?

A) 불법자산 등 제외되는 자산은 FDIC가 결정함

Q) 자산은 거의 없이 부채만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가?

A)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 거래에서 부채만을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참고로 FDIC는 비용테스트를 통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하므로 더 많은 자산을 인수하고자 하는 입찰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우선적으로 매각을 검토하지는 않음.

Q) 인수자가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FDIC와 인수자 중 누가 부담하는가?

A) FDIC는 입찰자가 제시한 각 POOL별로 청산시의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수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찰자가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포함하는 자산 부채 POOL을 제시하고 FDIC가 정한 최저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도 인수가 되며 이 경우 FDIC가 손실액을 보상하여 주게 됨.

Q) 잔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시 약정이자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FDIC에서 정하는 소정이자를 적용하는지?

A) 약정이자로 지급함.

Q) 재산실사 기준일은 언제로 하는지?

A) 적기시정조치(PCA)를 부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실사를 진행함.

Q) 계약이전시 Loss sharing을 반영하는지? 반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A) 계약이전시 가능한 많은 자산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특정 자산들에 대하여 손실분담 P&A(P&A with Loss Share)를 통해 동 자산의 손실 및 회수액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음. 손실분담 약정은 보통 주택 담보대출은 4~7년, 상업부동산대출은 7~10년의 기간으로 약정하며 FDIC가 손실과 회수액의 80%를, 인수자가 손실과 회수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Q) 예정가격은 어떻게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A) FDIC의 통계적인 경험률을 바탕으로 자산가치평가(AVR: Asset Valuation Review)를 실시하여 각 자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부실금융기관 매각시 입찰 수락이 가능한 최저가격으로 활용함.

Q) 영업권이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개략적인 산출을 할 수 있는지?

A) FDIC의 영업권 매각은 인수자가 계속기업의 적자분을 보상받고 최소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입찰자가 제시한 자산과 부채 FOOL에 대하여 비용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영업권을 반영하지는 않음. 인수인의 입장에서는 통상 예금 모집비용을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지불하는 것임.

Q) 최소비용 검증시 자산가치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A) 최소비용 검증을 위하여 FDIC는 인수후보자들의 입찰가와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비교하여야 함. 이에 따라 FDIC는 자산가치평가(AVR: Asset Valuation Review)를 실시하고 정보철(IP)에 FDIC가 추정 한 청산가치를 공개하여 부실금융기관 매각시 수용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활용함.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는 대출 등과 같은 다수의 자산그룹에 대해서는 통계적 표본추출방식으로 추정하고 기타 자산그룹에 대해서는 개별 자산별로 평가함.

Q) 입찰자별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기 다른 거래구조의 제안서에 대하여 최소비용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최종 정리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A) 위에서 말한 것처럼 FDIC는 자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청산시 각 pool별 FDIC의 손실액을 산정함으로서 입찰 수락이 가능한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함. FDIC는 이를 기준으로 청산시 FDIC의 손실금액과 각 입찰자들의 제안 내용에 따라 매각시 손실금액을 비교하여 비용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하게 됨.

Q) 최소비용 검증시 가교방식도 비교 대상으로 고려되는가? 고려시 어떤 프로세스로 최소비용이 결정되는가?

A) 최소비용검증시 가교방식은 고려되지 않음.

Q) 최소비용검증시 영업권의 산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 실제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최소비용검증시 FDIC는 청산시 FDIC의 손실금액과 각 입찰자들의 제안 내용에 따라 매각시 손실금액을 비교하여 비용테스트를 실시하기 때문에 영업권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음.

Q) 잔류되는 자산의 회수예상가액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A) FDIC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모든 자산에 자산가치평가(AVR: Asset Valuation Review)를 실시하여 청산가치를 추정하므로 잔류되는 자산의 회수예상가액도 이에 따라 산정됨.

Q) 금융회사를 파산방식으로 정리한 사례가 있는가?

A) 2002년 ~ 2011년까지 FDIC는 총 435개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으며 그 중 25개의 부실금융기관을 파산방식으로 정리하였음.

Q) 가교방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A) FDIC는 가교은행 설립을 통해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권 가치를 보유한 금융기관이거나, 급박하게 폐쇄되어 정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대형금융기관인 경우 및 파산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교방식에 의한 정리절차를 진행함.

Q) 대형금융기관 파산시 FDIC가 고려하고 있는 정리방식은 무엇인지?

A)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 문제 등으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FDIC가 사전적으로 인수자 선정 등 정리업무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고, 대형금융기관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 및 영업권 가치 등을 감안할 때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교은행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